

## #16. 기업을 위한 2024년 개정세법 분석(1)

### -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확대 -

안녕하세요. 김란 세무사입니다.

매년 발표되는 개정세법에는 조세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이 담겨 있습니다.

2024년 개정세법은 “경제활력·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”를 정책 목표로 ①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·투자·고용 지원, ②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·중산층 세부담 경감,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, ③ 인구·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위한 출산·양육, 지역균형발전 지원,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
앞으로 이어지는 연구자료를 통해 **2024년 개정세법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·투자·고용 지원과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이 주목해야 할 개정 및 신설 내용**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.

##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확대

### (1)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대상 확대(조특령 별표 7의 2, 조특령 별표 7)

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R&D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이동수단 등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. 기존 6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신설되고 세부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.

신성장·원천기술은 미래형 자동차, 지능정보,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, 콘텐츠,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, 차세대 방송통신, 바이오·헬스, 에너지·환경, 융복합소재, 로봇, 항공·우주, 첨단 소재·부품·장비,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. 기존 13개 분야의 신성장·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되고 세부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.

### (2)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

#### 가.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

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세액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특히,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개발비 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### 나. 세액공제대상비용

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,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요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,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 부담금
- ②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, 부품, 원재료 등의 구입비용
- ③ 소프트웨어(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), 서체, 음원, 이미지의 대여, 구입비용
- ④ 연구시험장비 및 시설의 임차비용
- ⑤ 대학,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
- ⑥ 연구인력의 위탁훈련비,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된 비용 등

다만, 다음과 같은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- 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
- ② 연구활동을 전담하지 않고 타부서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의 인건비
- ③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
- ④ 주주인임원으로서 지배주주 또는 주식을 10%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인건비
- ⑤ 퇴직금,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, 퇴직연금 부담금
- ⑥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, 컴퓨터 및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
- ⑦ 건물의 임차비용

### 다. 세액공제계산

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에 다음의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분	일반	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	당기분	증가분		
중소기업	25%	50%	30~40% <sup>1)</sup>	40~50% <sup>2)</sup>

중견기업	8~15%	40%	20~30% <sup>1)</sup> (코스닥상장 25~40%)	30~40% <sup>2)</sup>
대기업	최대2%	25%	20~30% <sup>1)</sup>	

<sup>1)</sup>20%(중소기업30%)+최대10%{(신성장R&D지출액/매출액)x3}

<sup>2)</sup>30%(중소기업40%)+최대10%{(국가전략기술R&D지출액/매출액)x3}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세움택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Copyright ©2024 SEUM Tax

김란 세무사

CTA

[ran.kim@seumlaw.com](mailto:ran.kim@seumlaw.com)